

# 제안서

2020. 11. 14

수신 : 국토 교통부

제목 : 택시기사 처우개선 및 발전에 대한 제안

제안자 소속 : 전 서울택시(주)택시기사

성명 : 김 춘 식

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안취지         |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 및 택시기사 처우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안분류         | 1. 일자리 창출<br>2. 승객 안전<br>3. 서비스질 향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현황분석<br>문제점  | 현재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유명무실화 되고 있습니다.<br>1.기준운송수입금 상승. 2.사고 다발 3.서비스 질저하 (조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구체적인<br>제안내용 | 이 제안은 2014년10월부터 2019년12월까지 5년2개월 동안 전액관리제에 의한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한 자료를 기반으로 제안, 및 택시 근로자 임금명세서 및 제안인 일계 및 월계표를 참조 바랍니다.<br>1.제작된 세차차량으로 각 사업장 순회하며 세차 2.택배택시 신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실시효과         | 1.일자리 창출 2.청결한 택시 3.빈번한 사고 예방 4.24시간 택배 서비스로 저생산 근로자 생계유지 및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방지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안 사항<br>전개  | 1.택배택시: 법인택시에 한하여 적용하여 시행.<br>2.세차원3명: 서울시의 257개 사업장에 의무고용.및 세차 차량을 이용함.<br>(세차원 용역, 세차할 장소:택시 가스 충전소.또는 이동 세차차량)<br>3.현재 서울택시(주) 예(#180 여명의 승무원 중 기준금 완납하고 추가금 가져가는 승무원 40여명 뿐이고, 최고 135만원,최저30여만원, 그 외 기준금 미달. |
| 보충설명         | 현재 서울지역의 전액관리제 실패는 기준금이 있는 사납금제로 기본금 70여만원에 승무수당 60여만원 책정된 사납금을 채워야하고 26일 만근을 하여야만 지급되는 60여만원의 승무수당으로 택시기사의 근무 강도가 심화되어 이로인한 빈번한 대형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.<임금협정서 참조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